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2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허선무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한 2019. 5.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340,3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7년과 2011년에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9. 7. 26.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였는데, 2020. 8. 13.을 기준으로 카드대금 98,340,358원, 수수료 및 연체료 6,518,81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6. 25.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596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6. 25.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5969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D의 위 매매계약은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즉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야 한다.

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9. 5. 27. 당시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법원이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적극재산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한철

별지

목 록

1. 경남 의령군 F 대 321㎡
2. 경남 의령군 G 전 865㎡.끝.

